

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0. 4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1인 가구의 증가,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률상 위임된 범위 내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사망자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, 2조)

나.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지원내용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(안 제5, 6조)

라. 지급신청, 점검 및 환수(안 제7, 8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0. 4.~10. 10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(故人)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무연고 사망자 등”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.
2. “공영장례”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일련의 장례절차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군수는 담양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2.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지원내용)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체 검안비, 영안실 안치료
2. 운구비 및 화장비용, 납골시설 안치료
3. 수의, 관,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
4. 장례업체·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6조(업무대행)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신청 및 결정 등)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(檢屍), 수사(搜查)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.

④ 군수는 공영장례 처리가 결정되면 신청인, 장례업체, 비영리단체 등

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점검 및 환수)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일자	
신청인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		장례일자	
사망자	성명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	사망일	년 월 일		사망원인		
장례수행자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연락처	
	장례일자			장례방법	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
「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담 양 군 수 귀하						
구비서류	1.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				2. 가족관계증명서	수수료
	3. 지급계좌 통장사본				4. 세금계산서, 견적서	없 음
5.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						
6. 화장증명서						
7. 봉안시설 안치증명서						
‘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,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다 ☐예 ☐아니오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〈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〉 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 : 실명 확인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장례처리 능력 여부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5년 4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						